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6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부승찬 · 이언주 · 백혜련  
박선원 · 김한규 · 한준호  
진선미 · 허 영 · 김영환  
안태준 · 윤종균 · 소병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분 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분석·관리 및 정부비축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
- 나.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취득 자료의 활용 및 보호, 관련 업무 비용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 다. 기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로 한정된 비축 원자재 대부분을 일반업체로 확대함(안 제45조).
- 라.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로 지정된 군수품에 대한 수급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재·부품 조달방안 및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제1항에 따른 수급현황 확인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방위산업체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보호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견진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품목의 종류·물량에 관한 사항
3. 정부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과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축 필요 사항
5.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는 제1항의 비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업체로 하여금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0조(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로 지정된 군수품에 대한 수급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재·부품 조달방안 및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제1항에 따른 수급현황 확인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u></p>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방위사업 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방위산업체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견진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기술 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의



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략)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산업

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위사

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품목의 종류·물량에 관한 사항
3. 정부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과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축 필요 사항
5.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는 제1항의 비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업체로 하여금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